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유지웅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76
----------	-----

발의연월일 : 2026.03.13.

발 의 자 : 유지웅 · 박미정 · 이은경
김지훈 · 안병두 · 신정태
하서영 의원(7명)

찬 성 자 :

1. 제안이유

최근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 말 관행적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언론보도 등으로 공무국외출장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 지침을 반영하여 관련 규칙을 정비하고 공무국외출장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함.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를 통해, 명확하고 체계적인 규정 정비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기준을 강화(안 제4조)
- 나. 공무국외출장 제한에 대한 기준을 강화(안 제11조)
- 다. 위법·부당한 출장에 대한 감사 조사 의뢰 의무를 규정(안 제12조)
- 라. 직원 보호 조항을 신설(안 제1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지방자치법」 제52조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 라. 입법예고 : 2026. 03. 17. ~2026. 03. 22.(5일),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국가이상”을 “국가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자매결연체결”을 “친선결연 체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공무국외출장자를”을 “공무국외출장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허가권자”를 “의장”으로 한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공모 절차를 통하거나 지방자치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회에 주민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제5조 중 “이전에”를 “전까지”로 한다.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1항과 제3항”을 “제1항 또는 제4항”으로 한다.

- ③ 간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별표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심사위원회에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개회중”을 “개회 중”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중전의 제5호) 중 “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국외출장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선진사례 견학 등 일반 목적의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필요성, 긴급성, 출장결과 활용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 ③ 의장은 허가 여부에 대한 검토서를 심사위원회 개최 이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심사위원회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를 포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및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의장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외출장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제4

항을 각각 제3항, 제4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본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의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출장결과보고서 심사 결과 위법·부당한 출장으로 판단 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외부 및 내부 감사기구 등에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장은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의회 홈페이지,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고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직원 보호 등) ① 의회 소속 직원은 공무국외출장 시 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직원에 대해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동행 직원에 대하여 비용부담 강요,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출장 중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를 하여서는 안 된다.

[별표]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항목	심사기준	예	아니오
출장의 필요성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3.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지?		
	4.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 출장의 긴급성, 출장결과 활용성 등 요건을 충족하는지?		
지방의정과 의 관련성	1. 정책 연구 및 벤치마킹 목적에 부합하는 출장인지?		
	2. 방문지의 기관 면담자가 정해진 출장인지?		
	3. 해당 정책을 지역에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지?		
	2. 과거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3.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지?		
	4.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지?		
	5.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지?		
	6.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지?		
출장자의 적합성	1. 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지?		
	2. 출장자 중 징계·환수 처분으로 출장제한 사유가 있는지?		
	3.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었는지?		
	4. 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	1. 출장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지?		
	2.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감안, 방문 시기는 적합한지?		
	3. 국내외 등 출장을 자제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출장경비의 적정성	1.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2.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		
	3. 사적인 비용 지출 없이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하도록 계획하였는지?		
안전사고 예방 조치 적정성	1.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지?		
	2.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했는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무국외출장을 위해 공무
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3개 <u>국가이상</u>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u>자매결연체결</u>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 6. (생략) <p>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공무국외출장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p>② <u>심사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u> 	<p>제2조(적용범위)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 <u>국가 이상</u>----- ----- ----- 3. <u>친선결연 체결</u> ----- ----- 4. ~ 6. (현행과 같음) <p>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공무국외출장을 ----- ----- ----- ----- -----.</p> <p>② <u>심사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공모 절차를 통하거나 지방자치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u></p>

2. 지방자치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 ⑤ (생략)

⑥ 위원은 자신이 공무국외출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⑦·⑧ (생략)

제5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 전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 ①·② (생략)

<신설>

의장은 심사위원회에 주민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 의장-----

⑦·⑧ (현행과 같음)

제5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 -----

----- 전까지 -----
-----.

제9조(회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간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별표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심사위원에게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③ (생략)

④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동행하는 의회 소속 공무원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⑤ (생략)

제11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생략)

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생략)

5.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

<신설>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
----- 제1항 또는 제4항-----
-----.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11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
----- <단서 삭제>

1. ---- 개회 중----- . -----

-----.

2. (현행과 같음)

<삭제>

3. (현행 제4호와 같음)

4. 제5항-----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제12조(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출장

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국외출장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선진사례 견학 등 일반 목적의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필요성, 긴급성, 출장결과 활용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허가 여부에 대한 검토서를 심사위원회 개최 이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심사위원회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를 포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및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의장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외출장을 제한하여야 한다.

⑤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2조(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

① -----

따라 -----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재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후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처음 개최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④ (생략)

⑤ 의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의회 홈페이지,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고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사후관리 등) (생략)

<신설>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
----- 제3항-----

-----.

②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의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출장결과보고서 심사 결과 위법·부당한 출장으로 판단 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외부 및 내부 감사기구 등에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4조(사후관리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의장은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

<신 설>

장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의회 홈페이지,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고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직원 보호 등) ① 의회 소속 직원은 공무국외출장 시 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직원에 대해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동행 직원에 대하여 비용부담 강요,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출장 중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를 하여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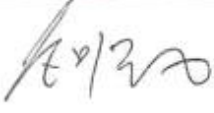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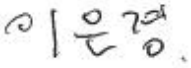



[붙임]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시행 2026. 1. 2.)

제52조(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유지웅 의원 대표발의)서명부

발 의 자		찬 성 자	
의 원 명	서명·날인	의 원 명	서명·날인
유지웅			
박미성			
이은경			
김지훈			
한병수			
신정재			
하서영	